

「시제품 개발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시와 함께 화성지역 소공인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상품개선·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 **사업명** : 소공인 시제품 개발 제작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소공인 시제품 개발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외주비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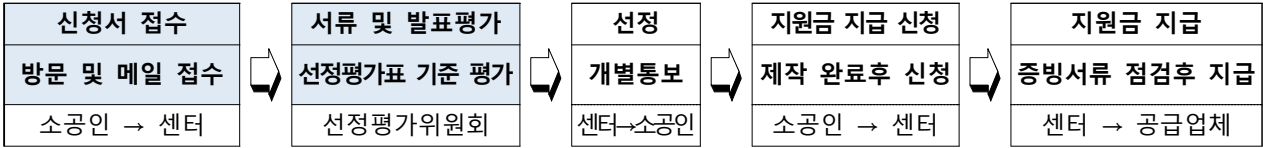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디자인 및 설계비용	시제품 개발 시 외주 업체에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
원자재 구입비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위탁 외주 가공비용	시제품 개발 시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금형 제작비용	시제품 개발 시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3D프린터, 목업, 금형제작) 등
시험분석 장비임대비용	시제품 개발 시 시험분석 지원 및 장비 임대비용 등
기타 비용	위의 열거되지 않은 항목 중 특화지원센터에 사전 승인을 득한 비용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800만원~500만원 한도(선정평가 고득점 순으로 차등 지원)
※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신청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불가 • 공급업체 선정시 당해 센터 사업(교육,마케팅,컨설팅,자율사업) 수혜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 불가 또한 당해 공급업체는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진행해야 함 • 본 사업 선정업체는 시제품제작 후 별도 기한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원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2. 추진절차

추진절차



단계별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준비사항 및 관련서류																								
① 신청 접수 (소공인 → 센터) '21.4.15(목)~5.4(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출서류</th> <th>부수</th> </tr> </thead> <tbody> <tr><td>1 사업신청서</td><td>1부</td></tr> <tr><td>2 개인정보동의서</td><td>1부</td></tr> <tr><td>3 성실이행서약서</td><td>1부</td></tr> <tr><td>4 사업자등록증 사본</td><td>1부</td></tr> <tr><td>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td><td>1부</td></tr> <tr><td>6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화면 인쇄본(날인필)</td><td>1부</td></tr> <tr><td>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td><td>1부</td></tr> <tr><td>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td><td>각1부</td></tr> <tr><td>9 시제품 개발 계획서</td><td>1부</td></tr> <tr><td>10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td><td>1부</td></tr> <tr><td>11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비교견적서)</td><td>각1부</td></tr> </tbody> </table>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성실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화면 인쇄본(날인필)	1부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9 시제품 개발 계획서	1부	10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11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비교견적서)	각1부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성실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화면 인쇄본(날인필)	1부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9 시제품 개발 계획서	1부																									
10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11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비교견적서)	각1부																									
② 선정평가 (소공인 → 평가위원회) '21.5.13(목)~5.14(금)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업체당 15분)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 ■ 서류평가 - 시제품 개발 계획서등 신청내용 평가 ■ 발표평가 - 업체당 15분 PT발표(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21. 5. 20 예정)																								
③ 협약 (센터 ↔ 소공인) ~'21.5.24(월)	협약 진행 및 공급업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선정 업체는 협약서(센터양식)를 작성하여 센터와 협약 체결 진행 ■ 공급업체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붙임7)를 받아 센터에 제출																								
④ 중간점검 (센터 → 소공인) ~ '21.7.20(화)	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	■ 현시점까지의 시제품 제작 과정 점검 및 사진등 서류 제출 요청																								
⑤ 시제품 개발 완료 (소공인) ~ '21.8.31(화)	시제품 결과물 도출 완료	■ 협약서에 제시한 100일 이내 시제품 개발 완료하여 결과물 제작 완료																								
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공인 → 센터) ~ '21.9.07(화)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출서류</th> <th>부수</th> </tr> </thead> <tbody> <tr><td>1 지원금 신청서</td><td>1부</td></tr> <tr><td>2 완료보고서</td><td>1부</td></tr> <tr><td>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td><td>1부</td></tr> <tr><td>4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비교견적서)</td><td>각 1부</td></tr> <tr><td>5 세금계산서 원본</td><td>1부</td></tr> <tr><td>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td><td>각1부</td></tr> <tr><td>7 공급업체 통장사본</td><td>각1부</td></tr> <tr><td>8 지부담액(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입금 확인증 1부</td><td>각1부</td></tr> </tbody> </table>	제출서류	부수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완료보고서	1부	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4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5 세금계산서 원본	1부	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1부	7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1부	8 지부담액(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입금 확인증 1부	각1부						
제출서류	부수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완료보고서	1부																									
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4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5 세금계산서 원본	1부																									
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1부																									
7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1부																									
8 지부담액(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입금 확인증 1부	각1부																									
⑦ 지원금 정산 (센터 → 공급업체) ~ '21.10.07(목)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공급업체로 지원금 입금																								

3. 신청자격, 신청방법

■ 신청자격

- 화성시 『C22, C24~C31업종』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 업체

산업분류코드	주요업종	산업분류코드	주요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신청방법

- 센터 방문접수 및 메일 (hsmfsc@gmail.com) 접수
- 소공인 사업자 대표 본인 신청
 - ※ 신청서류 미제출,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5일~ 5월 4일 17:00 까지

■ 지원규모

- 소공인 15 개사 내외(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 심사
- 2차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발표 평가(업체당 15분 예정)

■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 2021년 5월 20일 예정
- 지원대상 선정자는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신청서 기재된 핸드폰번호로 통보)

■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비고
필수	1. 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서식)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붙임2 서식)
	3. 성실이행 서약서 1부	(붙임3 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일기준 유효기간 확인)
	6.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본(날인필) 1부	센터 상단공지 매뉴얼 참고
	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센터 상단공지 매뉴얼 참고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제출일기준 유효기간 확인)
	9. 시제품 개발 계획서	(붙임4 서식)
	10. 제작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사본 각 1부	원본은 완료보고서 제출시 첨부

4. 선정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
 - (서류평가) 시제품 개발의 사업계획, 기술역량 등
 - (발표평가) 개발업체 현황, 추진과제의 타당성, 지원효과 등 업체당 15분 발표예정
-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발표평가, 서류평가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기준 고득점 순으로 지원한도액(최대 800만원~500만원) 차등 지원
 - 동점인 경우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1순위 : 추진과제의 타당성 고득점 업체
 - 나) 2순위 : 지원효과의 고득점 업체

■ 선정 결과 통보

- 선정업체 개별 통보

5. 유의사항_ 선정 취소, 포기, 변경, 공급업체, 견적서수령시

■ 지원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선정 통보일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제작)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외주업체 변경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법률 위반, 과제부실 등 화성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외주업체 변경 발생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함
- 사전 센터 협의 없이 지원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 지원 사업에 제약이 따름

■ 공급업체(제작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중에서 복수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
- 당해 센터사업(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수혜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 불가
당해 공급업체 또한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함.
- 공급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한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납품 관련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함.
-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10월 예정)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 시켜야 함.

■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시 다음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구분	필수항목	필수기재사항
1	견적일	사업모집기간
2	공급받는자	사업신청 업체명
3	공급하는자	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4	견적내용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원견적서와 비교 견적서에 동일한 품목, 규격 및 사양을 기입하여 상호 가격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

6.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완료보고

■ 지원금 신청 제출 기한

- 2021. 9. 07(화) 17:00까지(예정)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완료보고 제출서류

- 선정 후 시제품 완료된 업체는 기한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구분	제출자료 목록	비고
필수	1. 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8 서식)
	2. 완료보고서(제작 과정 사진 첨부)	(붙임9 서식)
	3.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붙임10 서식)
	4. 제작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각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6.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	
	8. 자부담 입금 확인증 각 1부	(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완료된 업체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등이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작 과정 사진 미첨부시 지급 불가함으로 반드시 제작과정 사진 확보에 유의
- (지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

■ 제작비용 자부담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 및 지원금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
- 자부담 입금시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상대 업체 대표자(또는 법인) 계좌이체만 인정
- (자부담 입금증빙) 송금확인증등으로 입금받는자(공급업체)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함.
- 센터는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의 방식
 - 센터에서 공급업체에 지급(사전에 지원금 지급기한에 대해 반드시 협의 되어야함)

7. 제재조치 등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화성상공회의소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2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공급업체 대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8. 신청서 및 서류제출 장소 안내

■ 신청서 제출처

- 주소 : 화성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2층)
- 연락처 : 031-354-3641 / • 팩 스 : 031-354-3642
- 메 일 : hsmfsc@gmail.com